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8. 1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징수정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화하여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신설, 체납·결손자료 제공기준 정비,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 등 지방세외수입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한 징수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지원체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강화

징수공무원이 취득한 징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정보, 체납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제20조)

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 강화

1)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23조)

2) 결손액과 체납금액을 합산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족 중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3)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제도 상의 불합리, 법령·조례 간 상충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를 도입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1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유지 의무) ① 징수공무원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 관계법에서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징수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의 징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국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쟁송,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제2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3호(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징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징수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징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알게 된 징수정보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 따라 징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자료를”을 “자료 또는 과세정보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에 따라 알게 된 징수정보의 관리 및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국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쟁송,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제공”을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결과 및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세외수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제도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2. 관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3. 제4항제1호 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각 부처, 지자체에 대한 개선 권고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과세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비밀유지 의무) ① 징수공무원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징수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의 징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국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쟁송, 세

	무조사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조의3제4항, 제20조제2항 각 호, 제2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3호(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징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징수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징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알게 된 징수정보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에 따라 징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②(생 략)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 자료 또는 과세정보를 ---------- ---------- ---------- ----------. -------- ---------- ---------- ---------- ----------.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 ① ---------- ---------- ---------- ---------- ---------- ---------- ---------- ---------- ---------- ---------- ---------- ---------- ---------- -----. ---------- ---------- ---------- ---------- ---------- ---------- ------.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 ----------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질문권·검사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생 략)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1.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1. 제4조의2에 따라 알게 된 징수정보의 관리 및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국세외수입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쟁송,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징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 ---------- ---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및 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결과 및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세외수입 관리에 있어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세외수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2. 관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3. 제4항제1호 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각 부처, 지자체에 대한 개선 권고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 과세정보----------.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연 락 처	02-2100-3638